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. 6. 11 선고 2024가단110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4. 23.

판 결 선 고 2024. 6. 11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(소외 D 명의 지분)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23. 11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3. 11. 28. 접수 제14616호로 경료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E 주식회사가 소외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대하여 갖고 있는 대출금채권(2012. 11. 26. 자, 300만원)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거쳐 2017. 9. 11. 양수받은 회사로서 2023. 10. D에 대하여 위 대출금 3,800,090원 및 그중 874,815원에 대하여 2023. 9. 24.부터 완제일까지 연 36.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(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58507).

나.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3. 11. 16. 형제관계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매매(이하 ‘이 사건 매매’라 한다)계약을 체결하고, 2023. 11. 28.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14616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

가. 본안 전 항변의 요지

D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(이 법원 2022가단14262) 2023. 6. 승소판결을 받았다. 이에 기하여 2023. 7.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그 후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. 피고가 2023. 11. 16. 위 회사에 2,000만원을 지급하였다. 이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후속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는바, 다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위 각 증거에 의하면, H(D의 모)이 2005. 7. 11. 사망하였고, 2022. 6. 17.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

한다)가 이루어졌으며, 이에 따라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, 그러자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,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,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, 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, 피고가 위 회사에 2,000만원을 지급하였고, 경매절차가 취하된 사실, 피고가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이던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 사건 소송은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문제로 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함이 명백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

가.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,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).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(대법원 1966. 10. 4.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).

나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인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 I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, 그에 관한

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그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(항변)하므로 살피건대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그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(항변)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라.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4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

가.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,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).

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).

나.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분의 2 지분(소외 D 명의 지분)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3. 11. 28. 접수 제14616호로 경로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다.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국식

별지